

# 서울특별시 남산예정자락 주차장 운영 대행 동의안

의 안 번 호	201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남산예정자락 주차장은 남산의 예정자락 능선을 복원하고 경유차량 진입제한 시행에 따른 관광버스와 녹색순환버스 환승을 위한 주차장으로 연말 준공예정임
- 나. 주차장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시설공단에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관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남산예정자락 주차장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예장동 4-1일대
- 소유자 : 서울특별시
- 규모 : 8,445 $m^2$ (버스주차구획 40면)

※ 문화 및 근생시설 1,045 $m^2$  별도

### 나. 주요 대행 업무

- 대행기관 : 서울시설공단
- 대행기간 : 1년 ('21. 1. 1. ~ '21. 12. 31.)
  - '16.12.30. 체결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적용 ('17.1.1. ~ '21.12.31)
- 대행인력 : 13명 예정(전기·기계5, 주차관리6, 미화2)

- 대행업무 :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
  - 주차장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  - 주차장 부대시설 운영
  - 주차장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관리 및 보수·보강 등

#### 다.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남산 경유차량 진입제한 시행에 따른 순환버스 환승을 위한 주차장이 준공됨에 따라 우리시가 설립한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행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제고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)

- ② ~ ③ 생략

○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다른 조례에서 "위탁한다"고 규정한 경우

2.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. 다만,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

3.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
④. 생략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. 생략

나. 예산조치 : '21년 예산(안)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김수환 (☎ 2133 - 2370)